

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04. 개정 2021.03.12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4.04.29.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입학전형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입학전형 방법 및 입시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03.31., 2022.03.04., 2024.04.29.>
- ③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입학팀 및 IT지원팀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6.03.31., 2019.04.04., 2021.03.12., 2022.03.04.>

제3조 (직무)

위원회는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입시부정을 방지하고, 학생모집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, 신체적·정신적·인종적·경제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정책이 없도록 관리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2012.11.08.>

- ① 입학전형 방법 및 요강에 관한 사항
- ② 입학 사정원칙에 관한 사항
- ③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
- ④ 입학원서 배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입학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4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 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의결된 사항의 시행)

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며,

그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입학전형 업무에 반영 한다.

제7조 (위원회의 사무)

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팀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8조 (전형자문위원회) <신설 2013.7.1.>

- ① 입학전형의 발전 및 신규 전형개발을 위한 전형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전형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제9조 (수당) <신설 2019.4.4.>

필요한 경우 총장은 위원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3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3.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4.2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